

6 · 25전쟁 이전 북한 내무성의 조직과 간부

김선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논문요약

북한 내무성의 중앙부서는 1949-1950년 당시에 6개 국과 약 180개의 처·부·과로 구성되었다. 내무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에 비해 지방 단위에서 경비·보안·정보·사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사회·주민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했다. 내무성은 내무국에 비해 조직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중앙부터 지방까지 내무기관을 촘촘히 설치함으로써 북한의 전체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고 사회 영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내무성은 치안유지, 주민생활, 사회안전, 정보·사찰 등에 관한 산하부서를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함으로써 국내외의 위협과 혼란으로부터 신생 정부를 안전하게 보위하고 주민들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했다. 내무성의 중앙간부는 내무상 박일우를 비롯해 72명이 확인된다. 각 정치세력의 비율을 보면 내무성 중앙은 조선의용군 출신과 고려인이 양분하고 있었고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국내공산주의자가 일부 진출해 있었다. 조선의용군 출신은 내무성 전체의 지휘권과 내무군·정치사상사업·군수부문·사법부문의 책임자를 맡았으며, 고려인은 북한지역의 치안·주민생활부문과 정보·사찰부문, 내무성 검찰부문의 책임자를 맡았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세력은 인민군과 내무군을 각각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에게 책임지우는 역할분담을 통해 무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달성했다. 내무성은 간부들의 사회계급·근무경력·정치성을 간부정책의 기준으로 삼았고, 근로계급으로서 내무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노동당과 북한정부에 우호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진 간부를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주제어 : 북한 경찰, 내무군, 인민군, 내무서,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 당=국가체제, 박일우

I. 머리말

2024년 현재 북한에서 치안유지와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구는 사회안정성이다. 사회안전성의 기원은 1945년 11월 19일에 설립된 북조선행정국의 보안국이며, 보안국은 치안, 국경경비, 대남공작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북조선행정국의 보안국은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개편되었고, 보안국은 1947년 2월 20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 명칭이 내무국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은 1948년 9월 9일 북한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내무성으로 개편되었다.¹⁾ 이 내무성이 북한 최초의 공식적인 경찰조직이다.

현재까지 북한 내무성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다만 북한의 경찰을 연구하면서 내무성에 대해 일부 사실이 확인되었다. 먼저 북한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 연구에서 내무성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과 활동내용이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내무성 간부는 내무상·보안국장·정치보위국장과 정치보위국 제1처장이 확인되었다.²⁾ 그리고 북한의 인민보안부인민보안성에 대한 연구에서 내무성의 설립 과정이 밝혀졌다.³⁾ 한편 내무성의 전신인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과 내무국의 전신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의 조직·활동·간부를 분석한 연구성과가 있다.⁴⁾

선행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내무성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은 사

- 1) 북한 내무성은 1962년에 사회안전성으로 개편되었고 사회안전성은 2000년에 인민보안성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인민보안성은 2010년·2016년에 각각 인민보안부·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되었다가 2020년에 사회안전성으로 개편되었다. 배진,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pp. 58~64.
- 2) 연정은, “북한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 『史林』 61호, 2017, pp. 215~246;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p. 947.
- 3) 신현기,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2권 2호, 2002, pp. 141~162;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7~23; 성준혁,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pp. 28~30; 김용환,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5권 2호, 2017, pp. 51~88.
- 4)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86호, 2012, pp. 293~324; 김선호, “국가건설기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조직과 정치세력 구성.” 『동북아연구』 37권 1호, 2022, pp. 5~39.

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내무성 중앙부서의 구성과 지방조직의 구성이 아직 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내무국의 중앙간부도 4명만 밝혀졌을 뿐 다른 간부는 한명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무성에서 활동한 각 정치세력의 분포와 내무성이 지향한 간부정책도 해명되지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새로 발굴한 자료를 바탕으로 6·25전쟁 이전 내무성의 전체적인 조직체계, 담당업무, 간부구성, 간부충원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1948-1950년 당시 내무성의 조직과 간부를 거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은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함으로써 후속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이 글은 내무성의 중앙부서와 지방조직을 재구성하고 각 조직이 담당할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내무성의 중앙부서를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중앙부서와 비교함으로써 내무성의 특징을 해명하고자 한다. 둘째, 이 글은 내무성에서 활동한 중앙간부를 밝히고 이들의 경력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무성에 배치된 각 정치세력의 분포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글의 주요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소장된 미군노획문서(美軍鹵獲文書)이다.

II. 내무성의 설립과 조직체계

북한의 정치세력은 1948년 7월부터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7월 9-10일에 개최한 제5차 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8월 25일에 전체 북한지역에서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9월 8일에 공식적으로 헌법을 채택했다.⁵⁾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金日成)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정권과 권한을 이양했다.⁶⁾

5)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북한관계사료집(이하 사료집)』 7권, 국사편찬위원회(편), 1989, pp. 760·769~770·773~774. 『북한관계사료집』은 다음부터 간행정보를 생략한다.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원”을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북한정부가 수립되었다.⁷⁾ 북한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면서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으로 개편되었다. 내무성은 성 직속으로 6개 국, 5개 처, 7개 부를 설치했다. 6개 국은 보안국, 경비국, 문화국, 후방국, 검찰국, 정치보위국이었고, 5개 처는 간부처, 경비보안처, 교화처, 대부처, 시설처였으며, 7개 부는 총무부, 재정부, 통신부, 의무부, 기요부(機要部)⁸⁾, 제5부, 문화부였다. 또한 내무성의 직속기구로 무력후방위원회, 직속대대, 내무성 보안간부학교가 있었다.⁹⁾ 내무성 후방국은 직속기구로 중앙병원과 무기수리소를 두고 있었고 방계(傍系)사업체로 공급소·자동차수리공장·피복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보안국·경비국·후방국·교화처에는 내무성 간부처와 별도로 간부과가 조직되었다.¹⁰⁾

내무성의 중앙부서는 현재까지 보안국과 정치보위국의 존재만 알려져 있으며 다른 국처와 산하부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¹¹⁾ 그런데 내무성 간부처는 1950년에 『내무성 산하 각기구 체계표』를 생산했다. 이 문서에는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내무성의 중앙부서가 국처·부는 물론 부원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자료를 통해 새로 확인한 내무성의 중앙부서를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
- 6) 金日成, “정권위양에 관한 성명(1948. 9. 8).”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 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8. p. 256.
- 7)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편(편), 『사료집』 7권, p. 774.
- 8) 북한에서 기요(機要)란 ‘중요한 기밀’을 뜻한다. 사회과학출판사(편), 『조선말대사전』 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439.
- 9) 내무성, 『전화번호 일람표』, 평양: 내무성, 1950,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10; 내무성 간부처, 『幹部事業規程』, 평양: 내무성 간부처, 1949. 1,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8. SA자료는 다음부터 ‘SA 2006-16-10’ 등으로 축약한다.
- 10) 내무성 간부처, 『幹部事業規程』.
- 1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p. 947; 연정은, “북한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 pp. 234~235.

〈표 1〉 내무성 중앙부서의 구성¹²⁾

| 상위부서 | 부(副)책임자 | 제1산하부서 | 제2산하부서 |
|-------|---------|-----------------------------------------|--------------------------------------------------|
| 보안국 | 제1부국장 | 호안처 (제3처) | 해사부, 통운검사부, 원동기부, 사회부, 화약부, 검열부(위생검열과·시설검열과) |
| | | 기요부(제1과·제2과), 의사부 | |
| | 제2부국장 | 감찰처 | 일반감찰과, 기업감찰과, 철도감찰부, 통계부 |
| | | 간부부(등기과·검사지도원), 통행증부, 예심부 | |
| | 제3부국장 | 감식처 | 범의화학부(흥기와 범의과·화학과), 필적감정부, 지문부(지문대조과·지문감정과), 사진과 |
| | | 군사등록부 | 등록과, 운수과, 기요과, 재정경리과 |
| | | 교양부 | 교양부부장, 선전부부장, 서무과 |
| | 제4부국장 | 재정부 | 회계과, 사계과 |
| | | 공민증부 | 공민증과, 통계과 |
| | | 후방부 | 계획과, 공급과 |
| 통신부 | | 무선과, 유선과, 자재과, 무선통신소 | |
| | 소방부 | 소방과, 기재과 | |
| 경비국 | 제1부국장 | 경비처 | 해안경비부, 철도경비부, 통신경비부, 기관경비부, 공장경비부 |
| | 제2부국장 | 국경경비처 | 국경경비부, 밀수방지부, 사찰부 |
| | | 간부부 | |
| 정치보위국 | 부국장 |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 |
| 문화국 | 제1·2부국장 | 조직부, 청년사업부, 선전부, 간부과, 기요과, 문화공급과 | |
| | 제3부국장 | 내무성협주단, 내무성극단, 창작부, 내무성체육단, 체육과 | |
| 후방국 | 제1부국장 | 계획부, 검열부, 건물관리부, 운수창고부, 차량관리부, 피복부, 양식부 | |

12) 내무성 간부처, 『내무성 산하 각기구 체계표』, 평양: 내무성 간부부, 1950, pp. 1~39,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1143; 내무성, 『전화번호 일람표』: 내무성 간부처, 『幹部事業規程』: 保安局長 貴下, “收取證”(1948. 10. 4).; 보안처, “경비보안처 부과장 회의내용(1948. 11. 8).” 『사건관계서류』(1), 평양: 보안처, 19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김덕홍, “보안국장 귀하(1948. 10. 5).” 보안처(편), 『사업관계서류』, 평양: 보안처, 19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내무성 시설처장 이윤식, 대부처장 권녕화, “鐵道輸送事業에 對하여(1950. 2. 9).” 運輸科, 『秘書類綴』, 평양: 내무성 운수과, 1950, NARA, ATIS Enemy Documents, No.200991, ATIS자료는 다음부터 ‘ATIS-문서번호’로 축약한다.

| 상위부서 | 부(副)책임자 | 제1산하부서 | 제2산하부서 |
|----------------|---------|-------------------------------------------------------|------------------------------|
| | 제2부국장 | 간부와, 재정과, 서무과, 기요과, 철도경무부, 무력후방위원회 | |
| 검찰국 | 부국장 | 예심부 | |
| 간부처(제1처) | 부처장 | 제1부, 제2부, 제3부(기요과양성지도), 제4부(검사지도) | |
| 경비보안처 (제7처) | 부처장 | 경비보안부 | 경비보안과, 훈련과, 대열과 |
| | | 문화부 | 조직과, 선전교양과, 청년사업과 |
| | | 후방부 | 조직계획과, 재정과, 양말과, 피복과, 군수품공급장 |
| | | 지방훈련부 | 서원훈련과, 민간훈련과 |
| | | | 간부와, 기요과, 병기와, 교도중대, 군의소 |
| 교회처 | 부처장 | 생산부 | 계획과, 자재과, 로무과 |
| | | 경리부 | 서무과, 행정경리과, 생산경리과 |
| | | 교회부 | 교회과, 계호과, 명적과 |
| | | | 간부와, 교양과, 의무과, 기요과 |
| 대부처 | 부처장 | 모름 | |
| 시설처 | 부처장 | 검사부, 계획부, 조사부, 연구부, 총무부, 편집부, 재정과, 간부와, 노동과, 서무과, 시험과 | |
| 총무부 | 부부장 | 서무과, 공급과, 재정과, 건물관리과, 영선과 | |
| 재정부 | 제1부부장 | 종합, 부대계통 | |
| | 제2부부장 | 검열, 규정, 기술교양, 계획 | |
| | 제3부부장 | 서무, 출납, 후불확인증, 은행거래 | |
| 통신부 | 유선부부장 | 유선과, 전화소 | |
| | 무선부부장 | 전파감시소, 무선기술원 | |
| | | 계획과, 기재과, 기재수리소 | |
| 의무부 | 부부장 | 의무과, 방역과, 의약품과, 간부와, 총무과 | |
| 기요부 | 부부장 | 제1과, 제2과(등록발송접수등서관리일자출근부), 제3과 | |
| 제5부 | 부부장 |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 |
| 문서부 | | 부원(3명) | |

현재까지 확인된 내무성의 국은 6개, 처는 8개, 부는 84개, 과는 92개이다. 일반적으로 각 국 아래에는 2-7개의 처·부가 있었고 각 처 아래에는 4-11개의 과가 있었다. 내무성의 전신인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당시 중앙부서는 3개

처와 17개 부, 54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내무성의 중앙부서는 처보다 높은 국이 신설되었으며 176개 이상의 부과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내무성은 내무국에 비해 3배 가량 조직규모가 확대되었다.

내무성과 내무국의 중앙부서를 비교해보자. 내무성에는 내무국에 없던 후방국경비보안처·대부처·의무부기요부가 신설되었다. 내무국 정보처·문화부·검찰소·교회부·시설부는 각각 내무성 정치보위국·문화국·검찰국·교회처·시설처로 승격되었다. 가장 크게 변화한 부서는 보안국이다. 내무국 소방부가 내무성 보안국에 편입되었고 보안국에 군사등록부와 교양부가 신설되었다. 또한 내무국 보안처 감정과가 내무성 보안국 감식처로 승격되었다.¹³⁾ 따라서 내무성은 내무국에 비해 군사시설경비·훈련·보안·기밀업무를 강화했음을 알 수 있다.

내무성에서 가장 큰 부서는 보안국으로 4명의 부국장이 호안처(護安處)·감찰처·감식처와 12개 직속 부를 관할했다. 보안국은 사회·통운·검사·원동기·해사·통행·증·공민증 등 주민생활업무, 감식 등 범죄수사업무, 외사감찰 등 감찰업무, 군사등록 등 군사행정업무, 소방업무를 관장했다. 경비국은 2명의 부국장이 각각 경비처와 국경경비처를 관할했으며 국경·해안·철도·통신·기관·공장에 대한 경비업무를 전담했다.

정치보위국은 6개 부로 구성되었는데 각 부의 구체적인 업무는 알 수 없다. 정치보위국의 고유업무는 국가정권기관을 정치적으로 보위하는 사업, 국가비밀을 엄수하는 사업, 모든 '반동분자'들을 폭로·분쇄하는 사업, 국가재산·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업 등이다.¹⁴⁾ 문화국은 3명의 부국장이 선전·문화·공급 등 내무원에 대한 정치사상사업과 협주단·극단·체육단 등 내무성의 문화단체를 관장했다. 후방국은 2명의 부국장이 내무성의 건물·운수·창고·차량·피복 등의 관리업무와 철도·경무부·무력·후방위원회를 관할했다. 검찰국은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다.

경비보안처는 국경·해안·국가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국과 달리 내무성 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와 내무원·민간인에 대한 훈련업무를 담당했다. 간부처는 내무성 간부들의 인사문제를 전담했고 시설처는 내무성 시설의 유지·보수

13) 내무국의 중앙부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했다. 김선호,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조직과 정치세력 구성.” pp. 14~15.

14) 정치보위부, 『정보기록장』, 평양: 정치보위부, 1950. 5. p. 2, SA 2009-4-103.

업무와 노무관계를 담당했다. 교화처는 북한지역의 교화소를 관할했으며 대부처는 지금이 조달대출을 맡았다. 내무성 직속의 각 부는 내무성의 총무·재정·통신·보건·기밀·문서를 각각 담당했다.

결국 내무성은 기본업무인 치안유지업무와 주민생활업무 외에도 소방업무, 국경·철도·국가기관 경비업무, 정보·사찰업무, 모병·군사훈련·군사후원업무, 범죄자 관리업무 등을 모두 담당했다.

다음으로 내무성의 지방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내무성의 지방조직은 지방인민위원회의 행정부서 중 하나로 설치된 내무부·내무서·내무분서 등을 뜻한다. 각종 자료를 통해 새로 확인한 내무성의 지방조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내무성 지방조직의 구성¹⁵⁾

| 상위부서 | 부(副)책임자 | 제1산하부서 | 제2산하부서 |
|--------------------------|---------|--------------------------|---------------------------------|
| 도 내무부 | 제1부부장 | 호안부 | 검열과, 원동기과, 통운검사와, 회약과, 사회과, 해사과 |
| | | 감찰부 | 일반감찰과, 기업감찰과, 통계과 |
| | | 군사등록부 | 군사등록과, 운수등록과, 기요과 |
| | | 감식과, 외사과, 공민증과(공민증계·통계계) | |
| | 제2부부장 | 소방과 | 소방계, 건물안전기사장 |
| | | 교양과 | 교양지도원, 선전지도원 |
| | | 기요과 | 기요계, 변신책임 |
| | | 통신과 | 유선기술원, 무선기술원 |
| | | 경리과 | 자재계, 피복계, 공급소관리, 운창 |
| | | 총무과 | 서무계, 피복관리, 부대관리, 청사관리 |
| 간부와, 예심과, 재정과, 문서과, 통행증과 | | | |
| 사군 내무서 | 부서장 | 감찰계 | 일반감찰반장, 기업감찰반장 |
| | | 공민증계 | 공민증반장, 통계반장 |

15) 내무성 간부처, 『내무성 산하 각기구 체계표』, pp. 23~26; 내무성 간부처, 『幹部事業規程』.

| 상위부서 | 부(副)책임자 | 제1산하부서 | 제2산하부서 |
|------|---------|---------------------------------------------------|--------|
| | | 기요계, 예심계, 군사등록계, 경리계, 문서계, 간부지도원, 군사지도원 | |
| | 문화부서장 | 교양지도원, 지도원 | |
| 내무부서 | | 분서장(5급), 보안반장, 감찰반장, 서무반장, 서원(3급), 서원(하사), 용원(하사) | |
| 분주소 | | 분주소장(4급), 서원(3급), 서원(하사) | |
| 파출소 | | 파출소장(4급), 서원(3급), 서원(하사) | |

도 내무부는 3개 부와 25개 과로 구성되었다. 도 내무부의 부서는 모두 내무성 중앙에 조직되어 있는 부서였으며 중앙에 설치된 부서보다 한 단계 낮은 급으로 설치되었다. 일부 부서는 중앙에 설치된 국처의 업무 중에 1-2개 업무만 담당하도록 설치되었다. 예를 들어 내무성 검찰국과 관련해서 예심과가 설치되었고, 시설처의 일부 업무를 총무과가 담당했으며, 문화국과 관련해서 교양과가 설치되었다. 이와 달리 도 내무부에는 내무성 중앙에 설치된 경비국, 정치보위국, 경비보안처, 교화처, 시설처 등과 관련된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국처는 도 내무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담당업무를 처리했다.

내무성 시설처는 도 내무부에 산하부서를 조직하지 않고 내무성의 시설문제를 종합적으로 관장했다. 교화처도 도 내무부에 관련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각 지역에 별도로 설치된 교화소를 직접 관할했다. 각 지방 교화소는 교화소장의 지휘 아래 명적과, 계호과, 교화과, 총무과, 의무과, 생산경리과, 생산과, 기재과로 구성되었다. 이와 달리 정치보위국과 경비보안처는 도 인민위원회에 내무부와 동등한 급의 산하부서를 설치했다. 도인민위원회 경비보안부는 경비보안부장의 지휘 아래 경비보안과, 문화과, 지방훈련과, 후방공급과, 군의소로 구성되었다.¹⁶⁾ 도인민위원회 정치보위부도 내무부와 동격으로 설치되어 인민정권 보위, 외부에서 침입하는 불순분자 적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¹⁷⁾ 그러므로 내무성은 내무국에 비해 지방 단위에서 경비·보안업무와 정보·사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16) 간부처, “교화소(No.1·No.2).”·“각도 경비보안부(자강도 제외).” 내무성 간부처(편), 『내무성 산하 각기구 체계표』, pp. 31~32, 38.

17) 연정은, “북한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 p. 233.

인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사회·주민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했다.

시군 내무서는 시군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부서로만 구성되었다. 기요계·경리계·문서계는 내무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서였다. 이를 제외하고 내무서는 내무원·기업·주민에 대한 감찰업무와 검찰업무, 주민들에 대한 공민증업무와 군사등록업무, 내무원에 대한 간부군사정치사상 지도업무를 담당했다. 관할지역이 넓은 군단위의 요충지에 설치된 내무분서는 치안유지업무와 감찰업무를 주관하는 반장만 배치되었으며, 읍면의 분주소와 동리의 파출소는 치안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내무서원만 배치되었다.

이처럼 내무성은 내무국에 비해 조직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중앙부터 지방의 동리까지 내무기관을 촘촘히 설치함으로써 북한의 전체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고 사회 영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치안유지, 주민생활, 사회안전, 정보·사찰 등에 관한 산하부서를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함으로써 국내외의 위협과 혼란으로부터 신생 정부를 안전하게 보위하고 주민들을 치밀하게 관리·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북한 지도부가 내무국에 비해 내무성의 조직과 역할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해방 이후와 달리 1948년 8-9월 남북에 단독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과 사상을 국가의 통제 아래 강력히 결속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 이후 지속된 남북교역·월남·대북첩보활동, 정부수립 이후 남북의 군사적 충돌과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찰기관인 내무성의 확대가 필요했다.

III. 중앙간부의 구성과 정치세력 분포

내무성에는 장관에 해당하는 1명의 상(相)과 차관에 해당하는 4명의 부상(副相)이 있었다. 소련 정치국은 1948년 12월에 소련군을 철수시키면서 특별히 내무상 고문으로 보좌긴 대좌를 임명해 잔류시켰다.¹⁸⁾ 현재까지 내무성의 중앙간부는 내무상·보안국장·정치보위국장과 정치보위국 제1처장만 알려져 있다.¹⁹⁾ 각

18)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서울: 선인, 2019, p. 532~533.

19)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p. 947; 연정은, “북한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 p. 234.

중 자료를 통해 새로 확인된 중앙간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무상은 박일우(朴一禹), 제1부상 겸 정치보위국장은 방학세(方學世), 제2부상 겸 보안국장은 박용삼(朴容三), 제3부상 겸 경비국장은 박훈일(朴勳日), 제4부상 겸 문화국장은 리주봉(李柱鳳)이었다.²⁰⁾ 2대 문화국장은 1950년 4월 당시 김한중(金漢中)이었다.²¹⁾ 내무성 후방국장은 리춘암(李春岩)이었으며,²²⁾ 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26일 당시에 공석이어서 후방국 부국장이던 변용봉이 “후방국장 대리”를 맡았다.²³⁾

내무성 검찰국장은 1948년 10월 28일 당시에 김학인(金學仁)이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²⁴⁾ 김학인은 1948년 7월 16일 당시 “조선인민군 검찰소장”이었다.²⁵⁾ 그는 1948년 12월 8일에도 인민군 검찰국장을 맡고 있었다.²⁶⁾ 사실 내무성 검찰국장은 고려인 윤성복이었다.²⁷⁾ 내무성에는 내무국과 마찬가지로 소련 군사령부에서 “고문관” 1명이 파견되었으며, 소련 고문에게는 비서 1명이 배치되었다.²⁸⁾

현재까지 국장 이하의 간부는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 내무성 정치보위국 부국장은 고려인 리광수였고,²⁹⁾ 정치보위국 제1처장은 고려인 김파(金波)가 맡았다.³⁰⁾ 내무성 보안국 제1처장(보안처장)은 1950년 4월 26일까지 윤성복이 맡다

-
- 20) 國內情報部, 『電話番號簿』, 평양: 國內情報部, 1949, p. 8, ATIS-206761; 부상 겸 보안국장 박용삼, “성경학교 개강신청서 제출에 대한 문의(1948. 12. 8).”; 內務省 副相 兼 保安局長 朴容三, “별지증명서 발급의뢰의 건(1948. 12. 15).” 보안처, 『사건관계서류』 (1).
- 21) 당중앙본부 부위원장 허가이,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기요부 기사문, No.00698(1950. 4. 30).”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지시문철(이하 조직부 지시문철)』, 평양: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1950, ATIS-201205.
- 22) 후방국장 리춘암, “자동차사고에 대한 운전자 행정처벌에 관하여(1948. 11. 25).” 보안처, 『사업관계서류』; 后方局長 리춘암, “鐵道輸送用 單位暗號 制定使用에 關하여(1949. 4. 4).” 運輸科, 『秘書類綴』.
- 23) 내무성 후방국장 代 변용봉, “6월분 수송계획사정 통지에 대하여(1950. 5. 26).” 運輸科, 『秘書類綴』.
- 24) 김선호, 『조선인민군』, 서울: 한양대출판부, 2020, p. 484.
- 25) 내무국 보안처장 박용삼, “엽총대금 납입의 건(1948. 7. 16).” 보안처, 『사건관계서류』 (1).
- 26) 人民軍檢察局長 金學仁, “엽총대금 청구 및 권총반환 회보에 관하여(1948. 12. 8).” 보안처, 『사건관계서류』 (1).
- 27)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 556.
- 28) 내무성, 『전화번호 일람표』.
- 29)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1, 서울: 선인, 2010, p. 447.

가 내무성 검찰국장으로 이임했다.³¹⁾ 내무성 경비국 총참모장은 황성복(黃成福)이었고³²⁾ 후방국 부국장은 1950년 4월 12일 당시 변용봉이었다.³³⁾ 내무성의 1대 간부처장은 강영균이었으며,³⁴⁾ 2대 간부처장은 1950년 2월 당시 위대성이 맡았다.³⁵⁾

내무성 문화국 부국장은 리영훈, 문화국 제1부부장은 홍승준, 문화국 제2부부장은 안광언, 문화국 제1부 지도원은 김충직이었다. 내무성 경비국 문화처 조직부장은 허우갑이었으며 경비국 문화처 책임지도원은 박종효였다. 내무성 경비보안처 조직과장은 한경산이었고³⁶⁾ 후방국 출입관리처장은 고려인 천영환이었다.³⁷⁾ 내무성 경비국 해안경비처장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최춘국(崔春國)이었으며³⁸⁾ 경비국 문화처장은 고려인 김두환(金斗煥)이었다.³⁹⁾ 내무성 시설처장은 리윤식(李允植)이었고 내무성 대부처장은 권녕화였다.⁴⁰⁾

내무성에는 6개의 국과 함께 약 180개의 처·부과가 있었는데 처·부과의 간부도 극히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무성 중앙부서의 간부를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
- 30) 육군정보국, 『《軍事極秘》 人民軍特報』, 서울: 육군본부, 1952, p. 252.
 31) 보안국 제1처장 윤성복, 『사무간소화에 대한 지시』, 평양: 보안국 제1처, 1950. 4, SA 2012-8-26.
 32) 박훈일·황성복, 『작전보고 No.66』, 평양: 내무성 경비국 총참모부, 1950. 3. 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33) 내무성 후방국 부국장 변용봉, “극비서류 회수보관 의뢰에 관하여(1950. 4. 12).” 運輸科, 『秘書類綴』.
 34) 간부처장 강영균, “영장처분 의래서(1948. 12. 13).” 보안처, 『사건관계서류』 (1).
 35) 내무상 박일우, 제1처장 위대성, 『1950년도 간부사업의 당면과업에 대한 지시』, 평양: 내무성 제1처, 1950. 2, SA 2006-16-49.
 36) 당중앙본부 조직부장 대 서용선,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지시문, No.00353(1950. 2. 25).”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조직부 지시문철』.
 37)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1, p. 447.
 38) 육군정보국, 『人民軍特報』, p. 258.
 39)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p. 61;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1, p. 447.
 40) 내무성 시설처장 이윤식·대부처장 권녕화, “鐵道輸送事業에 對하여(1950. 2. 9).” 運輸科, 『秘書類綴』.

〈표 3〉 내무성 중앙부서의 간부41)

| 부서명 | 간부 이름 |
|-------|-------------------------------------------------------------------------------------------------------------------------------------------------------------------------------------------------------------------------------------------------------------------------------------------------------------------------------------------------------------------------------------------------------------------------------------------------------------|
| 내무성 | 내무상 박일우[의] |
| 보안국 | 보안국장 박용삼[고], 보안국 제1처장(보안처장) 윤성복(50.4.26)[고] 호안처(제3처): 1대 호안처장 주치욱[국](48.10.4), 2대 호안처장 최병용(1950), 공민증부장 립문택, 공민증부 공민증과장 주일우, 공민증부 민적과장 마명수, 통운검사부장 김리한·김용추, 원동기부장 최광수, 사회부장 안병갈·최시, 화약부장 김윤국, 검열부장 민병수, 위생부장 대리 원장영, 간부부장 한영명, 서무과장 어득천 감찰처: 감찰처장 주광무[고], 감찰부장 박우봉, 기업감찰부장 곽요성, 철도감찰부장 정일택, 철도감찰부 부부장 리문환, 심사부 부부장 김주섭, 통계부장 전능일, 통계부 부부장 김광선, 감식부장 오찬근, 감식부 감정과장 김인환, 감식부 화학과장 리세진, 감식부 지문과장 김성만, 감식부 사진과장 리창현 보안국 제1부: 제1부 제1과장 정하중, 보안국 기요부장 김평 |
| 경비국 | 경비국장 박훈일[의], 참모장 황성복[고], 해안경비처장 최준국[항], 문화처장 김두환[고], 문화처 조직부장 허우갑, 문화처 책임지도원 박종효, 경비국 제1부장 김승호 |
| 정치보위국 | 정치보위국장 방학세[고], 부국장 리광수[고], 제1처장 김파[고] |
| 문화국 | 1대 문화국장 리주봉[국], 2대 문화국장 김한중[의], 부국장 리영훈, 제1부부장 홍승준, 제2부부장 안광언, 제1부 지도원 김충직 |
| 후방국 | 후방국장 리춘암[의], 부국장 변용봉, 후방국장 대리 변용봉(50.5.26), 출입국관리처장 천영환[고], 제1과장 지남학 |
| 검찰국 | 검찰국장 윤성복(50.4.27)[고] |
| 경비보안처 | 경비보안처장 강병학[의], 보안부장 이구을, 보안부부장 박용진, 문화부장 박치규, 문화부 조직과장 송세익, 문화부 교양과장 허경산 |
| 간부처 | 1대 간부처장 강영균(48.12.13), 2대 간부처장 위대성(50.2.15), 부처장 최중봉 |
| 교화처 | 교화처장 리근산[의] |
| 대부처 | 대부처장 권녕화 |

41) 표 위에서 확인한 명단과 다음 자료에서 확인한 명단을 종합했다. 내무상 박일우, “신임장 (1950.1-7).” 내무성 제1부 제2과, 『회수신임장철』, 평양: 내무성, 1950, SA 2005-7-30: 감찰처, “내무원 음주자 조사표(1948. 12).”; 保安局長 貴下, “收取證(1948. 10. 4).”; 내무상 박일우·기요부장 김평, “근무 및 학습시간 제정의 건(1948. 10. 11).”; 내무상 박일우·기요부장 대 김희봉, “1949년도 회의에 대한 계획서 제출의 건(1948. 12. 16).” 보안처, 『사건 관계서류』 (1), 격되는 간부들이 속한 정치세력인데 고려인은 [고], 조선의용군 출신은 [의],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항], 국내공산주의자는 [국]으로 표시했다.

| 부서명 | 간부 이름 |
|--------|--------------------------|
| 시설처 | 시설처장 리윤식 |
| 제3처 | 제3처 제1과장 박일채 |
| 재정부 | 재정부 부부장 김치옥, 기요부장 대리 김희봉 |
| 제1부 | 제1부장 김병덕 |
| 제5부 | 제5부장 엄일[고], 제5부 부부장 김용규 |
| 제7부 | 제7부 제4과장 원창영 |
| 최고검찰소 | 검사 김광운 |
| 중앙경위연대 | 연대장 한익수[함] |

내무성의 중앙간부를 정치경력별로 분류해 보면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 출신, 고려인, 국내공산주의자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간부에 국한하면 조선의용군 출신은 내무상 박일우, 경비국장 박훈일, 2대 문화국장 김한중, 후방국장 리춘암, 경비보안처장 강병학, 교화처장 리근산(李根山) 등 6명이다.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경비국 해안경비처장 최춘국, 중앙경위연대장 한익수 등 2명이다. 고려인은 보안국장 박용삼, 정치보위국장 방학세, 정치보위국 부국장 리광수, 정치보위국 제1부장 김파, 경비국 참모장 황성복, 경비국 문화처장 김두환, 후방국 출입국관리처장 천영환, 검찰국장 윤성복, 보안국 감찰처장·황해내무부장 주광무, 내무성 제5부장 엄일, 평양시 내무부 문화부부장 리세면 등 11명이다. 국내공산주의자는 1대 문화국장 리주봉, 보안국 1대 호안처장 주치옥 등이 있었다.

각 정치세력의 비율을 보면 내무성 중앙은 고려인과 조선의용군 출신이 분점하고 있었고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국내공산주의자가 일부 진출해 있었다. 조선의용군 출신은 내무성 전체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무성군대의 책임자와 내무성의 정치사상사업·군수부문·사법부문의 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또한 조선의용군 출신은 북한지역의 일반범죄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었다. 이처럼 내무성의 핵심부문은 조선의용군 출신이 담당하고 있었다.

고려인은 조선의용군 출신보다 많은 내무성의 최대 정치세력이었다. 이들은

북한지역의 전체적인 치안·주민생활부문과 정보·사찰부문, 내무성 검찰부문의 책임자를 맡았다. 특히 정치범죄·정보수집·사찰을 담당하는 정치보위국은 국장과 주요책임자를 대부분 고려인이 맡았다. 내무성의 감찰부문과 경비국의 부책임자 정치사상사업도 담당했다. 앞의 두 정치세력에 비해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소수의 간부만 내무성에 임명되어 해안 경비와 내각 지휘부의 경호 등 주로 경비임무를 맡았다. 국내공산주의자 또한 소수만 임명되어 정치사상사업의 책임자와 주민생활부문의 부책임자를 맡았다.

한편 각 도인민위원회 내무부장은 6명을 확인할 수 있다. 평안북도 내무부장은 1948년 12월 16일 당시 김병룡(金秉龍)이었고,⁴²⁾ 황해도 내무부장은 1949년 6월 당시 주광무(朱光務)였다.⁴³⁾ 함경남도 내무부장은 1948년 12월 17일 당시 한병혁이었다.⁴⁴⁾ 평양특별시 내무부 문화부부장은 고려인 리세면이었다.⁴⁵⁾ 1949년 10월 8일 당시 자강도 내무부장은 동태중이었고, 함경남도 내무부장은 한병혁이 맡다가 박정만으로 변경되었다. 함경북도 내무부장은 1949년 10월 10일 당시 리영빈이었다.⁴⁶⁾

이들은 해방 전후의 정치적 경력을 알 수 없으며,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 고려인들의 명단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황해도 내무부장 주광무는 1907년생으로 고려인이다.⁴⁷⁾ 그는 1948년 10월 1일에 “중성(中星)4” 계급을 달고 내무성 감찰처장으로 발령받았던 인물이다.⁴⁸⁾ 함남 내무부장 한병혁은 1920년

42) 내무성 부상 겸 보안국장 박용삼, “아편수송에 관하여(1948. 12. 16).” 국편, 『사료집』 9권, p. 426.

43) 황해도 내무부장 朱光務, “군사등록부 기요과 사업한계에 對한 지시(1949. 6. 21).” 서흥군 인민위원회 군사등록계, 『1949년도 일반서류철』, 서흥: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SA 2005-6-21.

44) 함경남도 내무부장 한병혁, “전화선 인계에 관한 문건 송부의 건(1948. 12. 17).” 보안처, 『사건관계서류』 (1).

45)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1, p. 447.

46) 자강도 내무부장 동태중, “三,四분기 사업 총결보고서 제출에 관하여(1949. 10. 8).”; 함경남도 내무부장 박정만, “3,4분기 총결보고서 제출의 건(1949. 10. 8).”; 함경북도 내무부장 리영빈, “三,四분기 시설사업 총결보고서 제출에 대하여(1949. 10. 10).” 평안남도 내무부, 『시설사업총결보고서』, 평양: 평안남도 내무부, 1949, p. 109·306·339, ATIS-201903.

47) 우동현,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 73.

48) 保安局長 賈下, “收取證(1948. 10. 4).” 보안처, 『사건관계서류』 (1).

생으로 해방 직후부터 함북 북청군과 리원군에서 보안간부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1946년 10월부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에서 활동했으며 1947년 7월부터 함경남도 내무부장으로 근무했다. 한병혁은 1949년 1월에 내무성 부국장으로 승진했다.⁴⁹⁾ 따라서 각 도 내무부장은 주로 특정한 정치세력에 속하지 않고 해방 직후부터 보안·내무기관에서 성장해온 간부 중에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내무성의 중앙간부는 어떤 경력을 배경으로 해당 직책에 임명되었을까? 내무성 중앙간부는 해방 전후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을 펼친 인물들이었다. 먼저 조선의용군 출신의 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무상 박일우는 일제시기에 조선혁명군정학교 부교장 겸 당위원회 서기와 조선의용군 부사령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무정(武亭)을 제외하고 조선의용군에서 최고위급 군사정치간부였다. 그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장 최용건(崔庸健)이 1946년 8월 15일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사령관으로 임명되자 8월 16일부터 2년 동안 줄곧 북한지역의 치안부문과 내무국군대를 책임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내무상으로 임명되었다.

내무성 경비국장 박훈일은 제3세계 혁명가를 양성하는 소련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했으며, 해방 후에 조선의용군 제7지대장으로서 중국 동북지역에서 부대를 지휘해 친국민당부대와 유격전을 전개하고, 화전현의 도시방어임무와 치안보위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⁵⁰⁾ 그는 조선의용군에서 지휘관으로 활동한 경험과 동북지역에서 치안유지·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반영되어 내무성 경비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내무성 후방국장 리춘암은 황포군관학교 보병과를 졸업한 정규군관학교 출신이다. 그는 조선의용대에서 정치지도원과 부지대장을 맡아 부대를 직접 지휘했다. 또한 그는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을 역임한 고위당간부로 1947년부터 내무국에서 경비처장으로 활동했고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내무성 후방국장으로 승진했다.

내무성 경비보안처장 강병학은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1946년부터 지방에서 보안서장·내무서장으로 활동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47년에 중앙에 발탁되어 내무국 경비처 부처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방보안업무와 내무국 경비업무를 두

49) “한병혁.” 백과사전출판사(편),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5.

50)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편), 『승리』, 北京: 민족출판사, 1992, pp. 94~99.

루 거친 실무자로서 내무성 경비보안처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내무성 교화처장 리근산은 해방 후에 조선의용군 제3지대 정치주임을 역임한 인물이다. 조선의용군 대원이었던 강병학이 경비보안처장에 임명되는데 비해 리근산은 조선의용군의 고위간부임에도 교화처장에 머물렀는데, 그 이유는 입북 이후에 업무에서 과오를 범해 직위가 강등되었기 때문이었다.⁵¹⁾

다음으로 고려인들의 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무성 정치보위국장 방학세는 소련의 종합대학 법학부 졸업생으로 주검찰소에서 부검사와 책임검사로 활동한 검사출신이다. 그는 제25군사령부에서 정치·사회부문의 부책임자를 맡았고 내무국 정보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치보위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내무성 정치보위국 제1부장 김파는 소련 극동군 제88독립여단 출신으로 정보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없지만, 소련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내무국 정보처 부처장으로 파견되었다가 이 경력이 반영되어 정치보위국 제1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내무성 보안국장 박용삼의 경력은 알 수 없는데, 내무국 시기에 제2인자의 위치인 보안처장을 역임한 것을 보면 정치보위국장 방학세처럼 소련에서 고위급 정치간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내무성 경비국 참모장 황성복은 소련 옴스크군사학원을 졸업한 군사경력을 가지고 있고, 해방 후에도 줄곧 창군업무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참모장으로 적격이었다. 경비국 문화처장 김두환은 소련 하바로프스크공산대학을 졸업하고 당지도원과 당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소련공산당의 당사업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같은 경력이 반영되어 경비국의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지는 문화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내무성 검찰국장 윤성복은 소련에서 주로 교원과 문화간부로 활동했고 검찰경력은 없었다.⁵²⁾ 그러나 소련 검찰의 이론과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교육경력과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평북 내무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업무능력

51)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이하 인명사전)』,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p. 207·219~220, 383;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이하 조선의용군)』, 서울: 명지출판사, 2000, pp. 123~125·129~130;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서울: 선인, 2003, pp. 380~381;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권,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 462;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3권, p. 514.

52) 장학봉, 『피와 눈물로써 써여진 우리들의 력사』, Washington D.C.: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미간행원고, 2000;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서울: 한울, 2008, p. 65; 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서울: 한울, 2013, pp. 111~112; 국편, 『자료집』 9권, p. 380.

을 높이 평가받아 검찰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내무성의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경비국 해안경비처장 최춘국과 내무성 중앙경위연대장 한익수가 있다. 최춘국은 동북항일연군에서 정치·군사간부를 역임했고 해방 후에는 창군요원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는 1948년 2월에 ‘조선인민군’이 창설됨으로써 창군활동이 종료되자 군사지휘관 경력이 반영되어 내무성 해안경비처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중앙경위연대장 한익수는 김일성이 지휘하는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6사 대원으로 보천보전투와 간삼봉전투에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군정학습을 받은 인물이었다.⁵³⁾ 그는 이 같은 경력이 반영되어 내각의 지휘부를 경호하는 중앙경위연대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다.

내무성의 국내공산주의자는 1대 문화국장 리주봉의 경력을 알 수 있다. 그는 일제시기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서 활동했고,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北朝鮮分局) 설립 당시에 국내공산주의자를 대표해 17명의 집행위원 중 한명으로 선출된 고위급 당간부였다.⁵⁴⁾ 그는 해방 직후부터 보안계통에 들어와서 함북 보안부장과 강원도 내무부장을 역임했다. 리주봉은 오랫동안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반영되어 내무성의 정치사상사업과 당사업을 총괄하는 문화부장에 임명된 것이다.

한편 내무성 시설처장 리윤식은 앞의 간부들과 다른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1931년에 외국에서 고등공업학교 토목과를 졸업한 기술자였다. 리윤식은 해방 직후부터 건설간부로 육성되었으며 중요한 도로·다리의 복구공사의 책임자로 활동했다.⁵⁵⁾

그밖에 내무성 감찰처 감찰부장 박우봉은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감찰부 감찰과장을 역임했으며 내무성 감찰처 심사부 부부장 김주섭은 내무국 심사과장이었다. 내무성 보안국 호안처 통운검사부장 김리환은 내무국에서 호안부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내무성 보안국 호안처 위생부장 대리 원창영은 내무국에서 청소과장을 역임했다.⁵⁶⁾

53) 강만길·성대경, 『인명사전』, p. 507;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p. 118; 최봉식, 『대성산혁명렬사릉』,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p. 69~70.

54) 강만길·성대경, 『인명사전』, p. 373;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p. 163.

55) 백과사전출판사 편, “리윤식.” 『조선대백과사전』.

내무성의 중앙간부 중에는 해방 전후 경력을 알 수 없는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원동기부·화약부·위생부·대부처·감정과 지문과 사진과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서가 많은데, 이런 전문부서는 리운식처럼 해방 전후에 해당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사업경험을 쌓은 인물이 발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내무성 감찰처 감찰부장 박우봉과 보안국 호안처 통운검사부장 김리환처럼 내무국에서 중앙간부로 활동하면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내무성에 계속 등용된 간부도 적지 않았다.

IV. 내무성의 간부정책과 간부충원

내무성의 간부들은 어떤 정책과 기준에 따라 등용되었을까? 내무성의 간부정책은 기본적으로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기조 아래 집행되었다. 간부정책의 핵심은 내무기관의 간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업, 간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업, 후비(後備)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이었다.⁵⁷⁾ 그러므로 내무성은 주로 성에 근무하기에 적합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무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된 인물을 간부로 등용했다.

내무성은 1950년에 간부사업에 대한 당면과업을 하달했는데 이 당면과업에는 내무성이 추구한 간부정책이 잘 들러나 있다. 내무성은 “내무기관 대열을 실시사업에서 검열되고 훈련된 근로성분의 간부진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내무성은 1949년도에 이미 내무성 간부들 중에서 근로성분의 비율을 높인 바 있다. 또한 내무성은 간부의 입면·이동시 “중앙집권적 유일성”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즉 간부들의 빈번한 이동을 방지하고 일정한 사업에 전문적으로 고착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군관간부에 대한 채용·해임·승급·강등·동급·이동까지도 내무상의 명령 없이 사전에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⁵⁸⁾

56) 김선호, “국가건설기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조직과 정치세력 구성.” p. 26.

57) 北朝鮮人民委員會 內務局長 朴一禹, “幹部事業 分掌에 對하여(1948. 7. 29).” 내무성 간부처, 『幹部事業規程』.

58) 내무성 제1처, 『1950년도 간부사업의 당면과업에 대한 지시』, 평양: 내무성 제1처, 1950.

내무성의 간부정책은 ‘근로성분 중심의 등용정책’과 ‘유일적 인사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문에 배치된 현재 간부에 대해 그 간부의 경력과 환경을 분석하고 근로인민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간부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둘째, 현재 간부를 재검토하고 대내순 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부단히 계속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오랫동안 내무기관에서 경험을 쌓은 현재 간부를 해임하는 데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셋째, 외부에서 새로 인입하는 간부는 해방 이후 국가건설사업에서 훈련된 근로성분의 간부를 채용하도록 했다. 넷째, 간부를 배치할 때 사무적인 면에만 치중하고 간부의 정치성을 제2의 기준으로 하는 경향을 퇴치하며 특히 후방계통 간부의 성분을 질적으로 개조하라고 지시했다.⁵⁹⁾

내무성은 간부들의 과거 경력과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간부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정치세력이 간부들의 경력과 성분(成分)을 간부등용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징적인 점은 내무성이 근로성분의 간부를 목적의식적으로 채용해서 전체 간부 중에 근로성분 간부의 비율을 높였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 ‘성분’은 출신·직업·사회생활의 경위에 따라 사람들을 사회적 부류로 나눈 것으로 사회계급적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성분은 다시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나뉘는데 출신성분은 태어날 당시 본인 집안의 사회계급적 관계에 따라 구분되며, 사회성분은 본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업과 사회계급적 관계에 따라 구분된다.⁶⁰⁾ 따라서 성분은 일종의 ‘계급’이었다. 그 중에서도 근로성분은 “노동자·농민·로력지식분자(사무원)”를 의미한다. 내무성이 노동자·농민·사무원 출신을 간부로 적극 등용한 이유는 이들이 바로 노동당에서 가장 신뢰하는 계급이었기 때문이다.⁶¹⁾

또한 내무성은 내무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현재 간부를 재검토해서 동일한 사업에 계속 등용하고 이들의 정치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배치하려고 구상했다.

2, SA 2006-16-49.

59) 내무성 제1처, 위의 책.

60)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권, p. 1646·1762;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권, p. 597.

61) 허가이, “黨長成과 黨組織 及 黨政治事業에 對한 諸課業(1946, 12, 25).” 국편, 『사료집』 34권, pp. 331~334.

이것은 현재 간부의 오랜 실무경험과 이들이 노동당과 북한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내무성은 간부들의 사회계급·근무경력·정치성을 간부정책의 기준으로 삼았고, 근로계급으로서 내무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노동당과 북한정부에 우호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진 간부를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간부를 임면(任免)하는 권한은 내무상의 권한이었지만 내무상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 내무성 간부의 임면 종류는 ‘신채용·임명·승급·강등·동급이동·사직·철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무성 간부의 임면권은 내무상, 내무성 간부처, 경비국·보안국 간부부, 후방국·교화처·도내무부·보안간부학교 간부과로 각각 구분되었다.⁶²⁾ 내무성이 간부의 임면권을 이처럼 다양하게 구분한 이유는 북조선인 민위원회 내무국에 비해 조직이 3배 이상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내무상이나 내무성 간부처에서 모든 임면권을 취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간부사업규정」을 보면 내무성에 임면권이 부여되지 않은 간부는 내각수상이 임면권을 가진 간부였다. 이들은 내무상과 내무부상이다. 내무성과 마찬가지로 다른 성의 상과 부상에 대한 임면권도 내각수상이 보유하고 있었다.⁶³⁾ 이들을 제외한 모든 간부는 내무성에서 임면했는데 간부 임면권은 간부의 직급에 따라 구분되었다.

크게 분류해보면 소성(小星)1 이상 간부(군관)의 임면권은 내무상이 가지고 있고, 소성 1 이하 하사관에 대한 임면권은 내무성 간부부장이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내무상은 후방국 산하의 방계사업체 책임자와 부책임자의 임면권을 보유함으로써 내무성의 군수부문을 장악했다. 한편 내무성 간부처장은 내무성 검찰국 재판소·보안간부학교에 대한 간부사업과 대외양성기관을 통해 양성되는 간부사업을 주관했다.

경비국·보안국·후방국·교화처·도내무부·보안간부학교의 간부부·간부처는 모두 자기계통의 소성1 이하 직원·하사관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부서·학교는 하급 직원과 하사관에 대한 인사에서 독자적 인사권을 보유했다. 이와 달리 내무성 검찰국과 내무성 재판소는 소성1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보

62) 내무성 간부처, 『幹部事業規程』.

63)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주권기관과 국가중앙집행기관』, 평양: 민주조선사, 1949. 9, p. 31, 80, SA 2007-7-26.

유하지 못했으며 이 임면권은 내무성 간부처에 부여되었다.⁶⁴⁾

내무성이 검찰국과 재판소의 임면권을 성 간부처에 부여한 것은 검찰국과 재판소가 간부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간부들의 처벌기록은 내무성뿐만 아니라 해당 간부가 다른 기관으로 이동한 후에도 배치·승급·강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었으므로 검찰국과 재판소의 임면권을 상급기관인 성 간부처에 부여한 것이다.

한편 내무성의 간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충원되었다. 첫째, 내무성은 직접 간부를 선발했는데 직접 선발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간부충원 경로였다. 대표적으로 내무성은 1948년 9월 22일에 여성간부를 채용했는데 각 도 내무부에 공문을 보낸 후에 도 내무부를 통해서 직접 선발했다. 모집인원은 평남 2명, 평북 2명, 함남 5명, 함북 5명, 강원 4명, 황해 2명이었다. 여성간부의 자격요건은 '20세 이상 25세까지의 여성당원으로써 신체건강하고 독신인 자'로 제한되었다. 또한 성분(노동자·빈농민)이 좋고, 가정관계와 경력이 좋은 자, 소학교 졸업 이상인 자를 뽑도록 했다. 또한 내무상은 이 간부선발 공문을 북조선로동당에도 동시에 발송했다. 노동당 중앙본부 간부부장 진반수는 각 도당 간부부장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서 도 내무부를 협조해 해당된 인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⁶⁵⁾

둘째, 내무성은 북조선로동당을 통해서도 간부를 충원했다. 내무상 박일우는 1948년 9월 21일에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간부부장에게 공문을 보내 내무성의 정보간부를 보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 내무성 정보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인원부족현상이 심해져서 사업에 큰 지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일우는 노동당 간부부장에게 이 문제를 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⁶⁶⁾

이와 반대로 내무성은 노동당 중앙본부로부터 간부나 간부후보생을 선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50년 5월에 내무성은 노동당 간부부장으로부터 '조선인민군 제2정치학교 1년반'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을 추천해 달

64) 내무성 간부처, 『幹部事業規程』.

65)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간부부장 진반수, "내무성 여성간부 채용 협조에 대하여(1948. 9. 22)." 민족보위성, 『인민군대·내무성첩』, 평양: 민족보위성, 1950, SA 2006-16-46.

66) 내무상 박일우, "정보간부 부족에 대한 대책 건의(1948. 9. 21)." 민족보위성, 『인민군대·내무성첩』.

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요청은 사실 노동당이 자체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민족보위성이 노동당 중앙본부에 의뢰한 것이었다. 내무성은 노동당의 요청에 따라 1950년 5월 25일과 6월 2일에 각각 내무성군대에 지시를 하달해서 군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내무성 간부처장 위대성은 6월 11일에 제2중앙정치학교 입학대상자 110명의 명단을 노동당 간부부장에게 보냈다. 내무성 간부처는 경비국계통에서 69명, 경비보안처계통에서 24명, 중앙경위연대에서 10명, 교화처에서 7명을 선발해 제2중앙정치학교로 보냈다.⁶⁷⁾

내무성이 간부를 충원하거나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항상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간부부가 관여하고 있다. 노동당 간부부는 내무성의 간부 충원에 협조하거나 직접 간부를 선발해서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북조선로동당이 내무성의 간부 충원에 직접 관여한 것은 노동당이 도입한 소련식 ‘노멘클라투라(Nomenclatura)’ 시스템 때문이다.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은 당이 국가기구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당을 국가와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⁶⁸⁾ 북조선로동당은 이미 1946년 10월 21일에 당단체·사회단체·군대의 노동당원 간부를 임명하거나 이동시킬 때, 반드시 노동당 중앙당과 도당(道黨)의 간부부에서 이를 취급하고 중앙상무위원회와 도당상무위원회에서 비준받도록 규정했다.⁶⁹⁾

그런데 북조선로동당은 1949년에 새로 「간부배치 및 이동에 대한 규정(이하 간부인사규정)」을 채택해서 인사권을 더욱 강화했다. 노동당은 이 규정에서 당단체와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협동단체, 인민군대·경비대·보안대 간부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당에서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1946년의 간부인사규정이 노동당원인 간부에 국한되었던 반면, 1949년의 「간부인사규정」은 당적(黨籍)에 상관없이 당·국가기관·단체·군대에 근무하는 모든 간부에 적용되었다.

「간부인사규정」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책임간부는 선거로 선발되지만 반드시 노동당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서 임명되었다. 또한 이 규정에 포함된 간부는 노동당의 비준이나 허락 없이 배치·이동·해임·철직시킬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그 기관 책임자와 간부취급 담당자를 당적으로 처벌했다.⁷⁰⁾ 노동

67) 내무성 제1처장 위대성, 『인민군 제2정치학교 학생취원에 대하여(11인반)』, 평양: 내무성, 1950. 6. 11, SA 2006-16-47.

68) 레오날드 사피로 저, 양홍모 역, 『蘇聯共產黨史』, 서울: 문학예술사, 1986, p. 529.

69)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하여(1946. 10. 21).” 국편, 『사료집』 30권, pp. 36~37.

당은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당·국가·사회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당=국가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서 당단체·국가기관·협동단체·사회단체·군대의 일정 직책 이상 간부는 임명 당시 반드시 노동당의 비준이 필요했다.

노동당은 간부의 인사권을 취급하는 단위를 간부의 중요도에 따라 당중앙정치위원회, 당중앙조직위원회, 당중앙 간부부, 도당위원회,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순서로 구분했다. 이 중에서 당중앙 간부부에서 취급하는 간부는 다시 당중앙조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비준하는 간부와 당중앙조직위원회에서 회람해 비준하는 간부로 나누었다. 노동당의 중앙당과 지방당에서 보유한 내부성의 인사권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북조선노동당이 보유한 내부성의 인사권⁷¹⁾

| 인사권 보유 | 구분 | 임면(任免) 간부 |
|----------------------------|-----|----------------------------------------------------------------------------------|
| •당중앙 간부부 취급 •조직위원회 토의비준 | 내무성 | 부상, 국장, 부국장, 경비국 참모장·군관, 간부학교 교장, 검찰국장, 재판소장, 도·평양시 내무부장 |
| | 내무군 | 여단장·참모장·부여단장·여단정치보위부장 이상, 연대장·참모장·부연대장 |
| •당중앙 간부부 취급 •조직위원회 회람비준 | 내무성 | 부처장, 직속 부부장, 국처의 부장, 경무장, 문화참모장, 문화부부장, 상급지도원, 간부학교의 부교장·교무부장·당위원장, 도·평양시 정치보위부장 |
| | 내무군 | 여단의 문화부장, 작전과장, 정찰과장,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상급지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문화간부 전원, 국경정치보위부장 |
| •당중앙 간부부 동의 | 내무성 | 내무성이 임명하는 7급 이상 간부 |
| | 내무군 | 대대장·문화부대대장 |
| •도당 간부부 취급 •도당위원회 비준 | 내무성 | 도·평양시인민위원회 직속 부부장 이상, 시·구역·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
| •시·구역·군당 비준 | 내무성 | 시·구역·군인민위원회 과장·계장, 면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 리인민위원회 위원장 |

70) 노동당 중앙본부,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한 규정(1949).” 국편, 『사료집』 1권, pp. 555~556.

71) 노동당 중앙본부,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한 규정(1949).” 국편, 『사료집』 1권, pp. 555~560.

노동당은 내무성 간부의 직책 고하에 따라 인사권을 취급하는 단위를 구분했는데, 내무부상·국장·여단장·연대장 등 상급간부의 인사문제는 당중앙조직위원회에 회부했고 7급 이상 간부의 인사문제는 당중앙 간부부에 일임했다. 도 내무 부장과 도 정치보위부장을 제외한 지방인민위원회 간부의 인사문제는 도당·시당·구역당·군당에 일임했다.

북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는 1948년 9월 25일에 처음 신설된 당기구이다. 당중앙조직위원회의 역할은 중앙당의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것이었다.⁷²⁾ 노동당이 중앙조직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중앙상무위원회의 일부 사업을 맡겨서 ‘집단적 지도원칙’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⁷³⁾ 북조선로동당 중앙정치위원회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사업 중에서 정치사업을 지도하는 당기구이다.⁷⁴⁾ 따라서 노동당의 최고 정치결정기구는 중앙정치위원회였다. <표 4>의 인사권에는 당중앙정치위원회에서 비준하는 간부와 내무상의 인사문제가 누락되어 있는데, 내무상에 대한 인사문제는 당중앙정치위원회에서 비준했을 것이다.

1949년 6월 당시 중앙정치위원은 김일성·김책(동북항일연군), 김두봉·박일우(조선의용군), 박헌영·허헌·리승엽·김삼룡(남조선로동당), 허가이(고려인) 등 9명이었다. 중앙조직위원은 중앙정치위원 9명과 최창익(조선의용군), 김열(고려인)이었다.⁷⁵⁾ 따라서 노동당 중앙당은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남조선로동당 출신과 고려인들이 집단적으로 지도하는 정치연합체제였다. 또한 노동당은 중앙조직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간부에게 당의 권력을 집중시켰다.

노동당은 내무성에서 가장 중요한 간부를 당중앙조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비준했다. 이 간부들은 부국장 이상과 직속기관장 등이었는데, 노동당은 내무군을 통한 경비임무와 도 내무부를 중시해서 경비국 참모장·군관과 도 내무부장의 인사문제도 당중앙조직위원회에서 토의했다. 당중앙조직위원회에서 회람한 후 비준하는 간부는 부장 이상과 간부학교의 교무부장 이상이였다. 노동당은 정치범죄와 방첩업무를 중시해서 도 정치보위부장의 인사문제도 당중앙조직위원회에

72) “당중앙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1948. 9. 25).” 국편, 『사료집』 29권, p. 73.

73) “당중앙조직위원회 사업에 대하여(1948. 10. 27).” 국편, 『사료집』 29권, pp. 128~129.

74) “제3장 당의 조직체와 그의 임무-제1항 중앙조직.”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북조선로동당 강령·규약』, 평양: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1950, SA 2009-6-127.

7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pp. 935~936.

회람시켰다. 도당 간부부는 도 내무부의 부부장에 대한 인사문제를 취급했고, 시·구역·군당은 시·구역·군 내무서의 계장에 대한 인사문제를 취급했다.

다음으로 내무군의 경우 중앙조직위원회에서 인사문제를 토의하거나 회람하는 간부는 부여단장 이상, 여단의 문화부장·정치보위부장·문화부장·작전과장·정찰과장, 부연대장 이상이었다. 노동당은 내무군에서 부연대장급 이상의 군사지휘관, 군인들의 정치사상문제를 담당하는 문화간부, 정치범죄·방첩임무를 담당하는 정치보위부장, 전투에서 작전과 정찰을 담당하는 작전과장·정찰과장을 특히 중시했다. 노동당이 인사권을 행사한 최하급 군사간부는 문화부대대장이다. 노동당은 문화부대대장부터 내무성 부상에 이르는 간부에 대해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내무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실현했다.

V. 맺음말

북한 내무성의 중앙부서는 1949-1950년 당시에 6개 국과 약 180개의 차·부·과로 구성되었다. 특히 내무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에 비해 보안국을 대폭 확대해서 군수·시설경비·훈련·보건·기밀업무를 강화했다. 도 내무부의 부서는 중앙에 조직되었던 부서 중에 한 단계 낮은 급으로 설치되었다. 이와 달리 정치보위국과 경비보안처는 도 인민위원회에 내무부와 동등한 급의 산하부서를 설치했다. 그러므로 내무성은 내무국에 비해 지방 단위에서 경비·보안업무와 정보·사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사회·주민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했다.

내무성은 내무국에 비해 조직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중앙부터 지방의 동리까지 내무기관을 촘촘히 설치함으로써 북한의 전체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고 사회영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내무성은 치안유지, 주민생활, 사회안전, 정보·사찰 등에 관한 산하부서를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함으로써 국내외의 위협과 혼란으로부터 신생 정부를 안전하게 보위하고 주민들을 지방에서부터 치밀하게 관리했다.

내무성의 중앙부서는 조선의용군 출신과 고려인이 분점하고 있었고 동북항일

연군 출신과 국내공산주의자가 일부 진출해 있었다. 조선의용군 출신은 내무상 경비국장·문화국장(2대)·후방국장·경비보안처장·교화처장을 맡았고, 고려인은 보안국장·정치보위국장·검찰국장, 정치보위국 부국장제1부장, 경비국 참모장·문화처장, 보안국 감찰처장, 후방국 출입관리처장을 맡았다.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경비국 해안경비처장과 중앙경위연대장을 맡았으며, 국내공산주의자는 1대 문화국장과 호안처장을 맡았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세력은 인민군과 내무군을 각각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조선의용군 출신에게 책임지우는 역할분담을 통해 무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달성했다.

내무성의 간부정책은 근로계급 중심의 등용정책과 유일적 인사정책이었다. 내무성은 간부들의 과거 경력과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간부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으며 전체 간부 중에 근로계급 간부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였다. 즉 내무성은 간부들의 사회계급·근무경력·정치성을 간부정책의 기준으로 삼았고, 근로계급으로서 내무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노동당과 북한정부에 우호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진 간부를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내무성 간부에 대한 임면권은 내무성에 부여되었지만 실제로 간부를 임면할 때는 북조선로동당이 토의·비준했다. 노동당은 내무부상·국장·여단장·연대장 등 상급간부의 인사문제를 당중앙조직위원회에 회부해서 비준했다. 그리고 7급 이상 간부의 인사문제는 당중앙 간부부를 통해 처리했고 지방인민위원회 간부의 인사문제는 지방당에 일임했다. 또한 노동당은 문화부대대장부터 내무성 부상에 이르는 간부에 대해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내무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실현했다. 노동당이 내무성의 인사권에 직접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당이 도입한 소련식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의 결과였다. 노동당은 1949년부터 당·국가사회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전체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당=국가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1·7·9·29·30·34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2·1989·1990·1998·1998·2000.
-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서울: 선인, 2019.
-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서울: 선인, 2003.
- 김선호, “국가건설기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조직과 정치세력 구성.” 『동북아연구』37권 1호, 2022.
- _____,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86호, 2012.
- _____,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서울: 한양대출판부, 2020.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주권기관과 국가중앙집행기관』,
평양: 민주조선사, 1949. 9, NARA, RG 242, SA 2007, Box 7, Item 26.
- 내무상 박일우, 제1처장 위대성, 『1950년도 간부사업의 당면과업에 대한 지시』, 평양: 내무성 제1처, 1950. 2, SA 2006-16-49.
- 내무성 간부처, 『幹部事業規程』, 평양: 내무성 간부처, 1949. 1, SA 2006-16-48.
- _____, 『내무성 산하 각기구 체계표』, 평양: 내무성 간부부, 1950,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1143.
- 내무성 제1부 제2과, 『회수신임장철』, 평양: 내무성, 1950, SA 2005-7-30.
- 내무성 제1처장 위대성, 『인민군 제2정치학교 학생취천에 대하여(11인반)』, 평양: 내무성, 1950. 6. 11, SA 2006-16-47.
- 내무성 제1처, 『1950년도 간부사업의 당면과업에 대한 지시』, 평양: 내무성 제1처, 1950. 2, SA 2006-16-49.
- 내무성, 『전화번호 일람표』, 평양: 내무성, 1950, SA 2006-16-10.
- 레오날드 샤피로 저, 양흥모 역, 『蘇聯共產黨史』, 서울: 문학예술사, 1986.
- 민족보위성, 『인민군대내무성철』, 평양: 민족보위성, 1950, SA 2006-16-46. 박종효
편 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1, 서울: 선인, 2010.
- 박훈일·황성복, 『작전보고 No.66』, 평양: 내무성 경비국 총참모부, 1950. 3. 8,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 배진,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백과사
전출판사(편),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5.

- 보안국 제1처장 윤성복, 『사무간소화에 대한 지시』, 평양: 보안국 제1처, 1950. 4, SA 2012-8-26.
- 보안처, 『사건관계서류』(1), 평양: 보안처, 19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 _____, 『사업관계서류』, 평양: 보안처, 19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지시문철』, 평양: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1950, ATIS-201205.
-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북조선로동당 강령·규약』, 평양: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1950, SA 2009-6-127.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1·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 서흥군인민위원회 군사등록계, 『1949년도 일반서류철』, 서흥: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SA 2005-6-21.
- 연정은, “북한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 『史林』 61호, 2017.
- 우동현,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6.
- 육군정보국, 『〈軍事極秘〉 人民軍特報』, 서울: 육군본부, 1952.
-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장학봉, 『피와 눈물로써 쓰여진 우리들의 역사』, Washington D.C.: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미간행원고, 2000.
- 정치보위부, 『정보기록장』, 평양: 정치보위부, 1950. 5, SA 2009-4-103.
-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승리』, 北京: 민족출판사, 1992.
- 최봉식, 『대성산혁명렬사릉』,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평안남도 내무부, 『시설사업총결보고서』, 평양: 평안남도 내무부, 1949, ATIS-201903.
- 한림대(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2·3권,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 國內情報部, 『電話番號簿』, 평양: 國內情報部, 1949, ATIS-206761.
- 運輸科, 『祕書類綴』, 평양: 내무성 운수과, 1950, ATIS-200991.

Abstract

The Organization and Officers of the North Korean Ministry of Home Affairs, 1948~1950

Seon Ho Kim(MND,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The central department of the North Korean Ministry of Home Affairs(MHA) consists of six bureaus and about 180 affiliated departments. The MHA exerted an overwhelming influence on North Korean society by expanding its organization three times as compared to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s Home Affairs Bureau and establishing an internal agency from the center to the provinces. In addition, the MHA secured the new government from domestic and foreign threats and closely controlled the residents by organizing various departments related to police affairs, political crime, and resident life. The central department of the MHA was occupied by ethnic Koreans in USSR and Korean Volunteer Army(KVA) group. In particular, the KPA group was in control of the MHA and the Home Affairs Army, and the ethnic Koreans in USSR took control of the political security agency. In addition, North Korea's political forces achieved checks and balances against the armed forces by sharing the roles of the People's Army and the Home Affairs Army from th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Group and KVA Group. The MHA made the rank, career, and politics of the officers the standard for the selection of officers, and deliberately employed the working class who worked for a long time at the internal affairs agency.

Keywords : North Korean Army, Home Affairs Army, Korean Volunteer Army,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Nomenclatura System, Kim Il-Sung, Park Il-Woo

투고일: 2024년 5월 13일, 심사일: 2024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8월 4일